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주식회사 네오위즈(이하 “당사”)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식회사 하이디어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5년 11월 27일로 기준일을 정함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2일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4(삼평동, 네오위즈판교타워)
주식회사 네오위즈　공동대표이사 김 승 철, 배 태 근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